

착공연기신청서

• 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일자		처리기간		일			
신청인	건축주										
	전화번호										
	주소										
대지위치				지번							
허가(신고)번호				허가(신고)일자					년	월	일
신청내용	착공예정일자								년	월	일
	연기사유										

「건축법」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건축주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안내										
제출하는 곳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	처리부서	건축허가(신고) 부서							
첨부서류	없음		수수료	원						
근거법규										
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4조 제2항	•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									
유의사항										
「건축법」 제11조 제7항, 제14조제5항	• 공사착수기간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,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 가 취소되며, 건축신고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.									
작성방법										
• 지번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 면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 • 착공예정일자: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자를 적습니다. • 연기사유: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										
처리절차										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확인서 작성	→	확인서 교부
신고인(건축주)	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건축허가·신고 부서)						신고인(건축주)		